

부동산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분양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납부세액에 금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 요청드립니다.

1. **납부 시기** : 분양계약서 작성 당일 (분양대금 납부 완료 기준)

2. **납부 금액** : 아래 계약체결 타입별 납부 분담 세액 중 '수분양자'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 체결 부동산	세 액	비 고
A, B, C, D, E, F, G 오피스텔, 상업시설	15만원	공급가격 기준 10억원 이하

3. **납부방법** (아래 지정 은행 계좌이체 납입, 현금 수납 절대 불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009901-04-169284	(주)민지씨앤디

※오피스텔 : 입금시 계약자명과 동 호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 (예. 102 동 301 호 홍길동 → 2301 홍길동)

상업시설 : 입금시 계약자명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 (예. L 층 102 호 성춘향 → L102 성춘향)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기재금액	세액
1. 부동산, 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 3천만원	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4만원
	5천만원 ~ 1억원	7만원
	1억원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제8조 (납부)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항제 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가산세] 2021년 01월 01일부터 적용

적용법률 조항	무(과소) 납부 기간	가산세율
가산세율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4 제 9 항)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무(과소) 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무(과소) 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무(과소) 납부 세액의 300%